|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에 대한 간소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회발[2015]13호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분국; 각 중자외환 지정은행: 자본항목 외환관리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경외투자자금운영을 촉진하고 편리하게 하며, 직접투자 외환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관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전기 일부지역에서의 시행경험을 종합한 것을 기초로 삼아, 전국적 범위 내에서 직접투자 외환관리 정책을 간소화하고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 외환등기 승인과 경외 직접투자 항목의 외환등기 승인 2개 항목의 행정심사 사항의 폐지 은행은 본 통지 및 첨부된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 (부록 참고)에 따라 직접 심사하여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환등기와 경외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환등기(이하 직접투자 외환등기라 통합하여 칭함)를 처리하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은 은행을 통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 한다. (1) 본 통지 실시 후, 이미 외환국 금융기구 식별번호를 취득하고 아울러 소재지 외환국에서 자본항목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은행은 직접 외환국 자본 항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경내 외상투자기업, 경외투자기업의 경내 투자주체(이하 상관 시장 주체라 함)를 위해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2) 은행 및 분지기구는 소재지 외환국의 지도 아래 직접투자 외환등기 등 관련된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아울러 권한범위 안에서 심사, 통계 검측 및 보고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관련 시장 주체는 직접 등록 소재지 은행을 선택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직접투자 외환등기가 완료된 후, 직접투자와 관련된 후속등기 업무인 계좌개설, 자본금 외국환 등 업무(이윤, 배당송금 또는 유입 포함)를 처리할 수 있다.2. 일부 직접투자 외환업무 처리 수속을 간소화한다. (1)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 외국인 투자자 출자 확인 등기관리를 간소화한다. 경내 직접투자 항목 중의 외국인 투자자 비 화폐 출자확인 등기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인 지분권 매입 출자확인 등기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화폐출자 확인등기는 경내 직접투자 화폐출자 기입등기로 개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화폐형식(외국환과 인민폐 포함)으로 출자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관련 자본금 금액을 수령한 후 직접 외환국 자본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내 직접투자 화폐출자기입등기를 처리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기입등기를 처리한 후의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2) 경외 재투자 외환 비안제도를 폐지한다. 경내투자주체가 설립하거나 혹은 지배하고 있는 경외기업이 경외에서 재투자하여 설립하거나 혹은 지배하는 새로운 경외기업은 외환 비안 수속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3) 직접투자 외환 연도검사를 폐지하고, 존량권익 등기를 실행한다. 상관된 시장 주체는 매년 9월 30일(포함) 전에, 직접 또는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거나, 은행의 외환국 자본 항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기 경내 직접투자와(또는)경외 직접투자 존량권익(이하 직접투자 존량권익으로 통합하여 칭함) 데이터를 보고한다.전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관련 시장주체에 대해 외환국은 자본항목 정보 시스템에서 업무 관리 통제를 진행하며, 은행은 그에 관한 자본항목의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요구에 따라 사후보고하고 외환국에 합리적인 이유가 적힌 설명서를 제출한 후, 외환국은 업무 관리 통제를 취소하고, 외환관리 규정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한다.외환국 직접투자 존량권익 표본조사에 참가하는 외상투자기업 등 관련 시장 주체는 직접투자 존량권익 표본조사 제도 요구에 따라 분기마다 등록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3.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등기의 합법적 법규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1)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의 내부관리 규장 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검토 후 비치해 두어야 한다. 내부관리 규장 제도는 적어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①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절차 규정. 업무수리, 자료의 합법성 및 진실성 심사 등 업무 절차와 운영기준이 포함. ②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리스크 관리 제도. 합법적 리스크 조사, 대조 심사와 분급 심사제도등이 포함.③ 직접투자 외환등기업무 통계보고제도. 데이터 수집 경로와 운영절차 등이 포함. (2) 은행은 자체적으로 외환국 금융기구 식별번호를 기 취득한 분지기구가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 업무의 진입관리를 진행한다.(3) 은행은 엄격하게 본 통지 및 첨부된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실히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하며, 외환국 자본항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아울러 관련 등기 자료를 온전히 보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4) 은행이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 만약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관련 시장주체의 등록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환국은 은행에 대한 교육지도와 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 외환국은 은행의 업무지도와 사후 감독 관리에 대해 강화해야 하며, 즉시 직접투자 외환업무 처리와 관련 데이터,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전달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은행에서 처리하는 직접투자 외환등기 적합성 및 내부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사후 심사와 조사를 진행하며,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처리하는 직접투자 외환등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이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2) 은행이 규정된 요구에 따르지 않고 직접투자 외환등기 심사, 통계, 보고책임을 이행할 경우 외환국은 외환관리 유관규정에서 정한 그에 관한 처벌 이외 그 은행이 직접투자 외환등기를 처리하는 것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규정위반의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거나 일시 정지기한 내 유효하게 개선할 없는 경우 외환국은 은행의 직접투자 외환등기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본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통지 실시 이후, 종전 규정과 본 통지 내용이 불 일치하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시행지역은 계속 《국가외환관리국 부분 지역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시행 유관 문제의 관한 통지》（회발[2014]36호）등 유관규정에 따라서 임의환전정책을 실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중신지국, 지국, 성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자 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각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부록: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생략)국가외환관리국2015년 2월 13일부록1: 직접투자 외환업무 운영 안내서부록2: 안내서부록 직접투자 외환업무 신청서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简化和改进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的通知**汇发[2015]13号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为进一步深化资本项目外汇管理改革，促进和便利企业跨境投资资金运作，规范直接投资外汇管理业务，提升管理效率，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总结前期部分地区试点经验的基础上，在全国范围内进一步简化和改进直接投资外汇管理政策。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一、取消境内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核准和境外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核准两项行政审批事项改由银行按照本通知及所附《直接投资外汇业务操作指引》（见附件）直接审核办理境内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和境外直接投资项下外汇登记（以下合称直接投资外汇登记），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通过银行对直接投资外汇登记实施间接监管。（一）本通知实施后，已经取得外汇局金融机构标识码且在所在地外汇局开通资本项目信息系统的银行可直接通过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为境内外商投资企业、境外投资企业的境内投资主体（以下简称相关市场主体）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二）银行及其分支机构应在所在地外汇局的指导下开展直接投资外汇登记等相关业务，并在权限范围内履行审核、统计监测和报备责任。（三）相关市场主体可自行选择注册地银行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完成直接投资外汇登记后，方可办理后续直接投资相关账户开立、资金汇兑等业务（含利润、红利汇出或汇回）。二、简化部分直接投资外汇业务办理手续（一）简化境内直接投资项下外国投资者出资确认登记管理。取消境内直接投资项下外国投资者非货币出资确认登记和外国投资者收购中方股权出资确认登记。将外国投资者货币出资确认登记调整为境内直接投资货币出资入账登记，外国投资者以货币形式（含跨境现汇和人民币）出资的，由开户银行在收到相关资本金款项后直接通过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办理境内直接投资货币出资入账登记，办理入账登记后的资本金方可使用。（二）取消境外再投资外汇备案。境内投资主体设立或控制的境外企业在境外再投资设立或控制新的境外企业无需办理外汇备案手续。（三）取消直接投资外汇年检，改为实行存量权益登记。相关市场主体应于每年9月30日（含）前，自行或委托会计师事务所、银行通过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报送上年末境内直接投资和（或）境外直接投资存量权益（以下合称直接投资存量权益）数据。对于未按前款规定办理的相关市场主体，外汇局在资本项目信息系统中对其进行业务管控，银行不得为其办理资本项下外汇业务。在按要求补报并向外汇局出具说明函说明合理理由后，外汇局取消业务管控，对涉嫌违反外汇管理规定的，依法进行行政处罚。参加外汇局直接投资存量权益抽样调查的外商投资企业等相关市场主体应按照直接投资存量权益抽样调查制度要求，按季度向注册地外汇局报送相关信息。三、银行应提高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的合规意识（一）银行应制定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的内部管理规章制度，并留存备查。内部管理规章制度应当至少包括以下内容：1、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操作规程，包括业务受理、材料合规性和真实性审核等业务流程和操作标准；2、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风险管理制度，包括合规性风险审查、经办复核和分级审核制度等；3、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统计报告制度，包括数据采集渠道和操作程序等。（二）银行自行对已经取得外汇局金融机构标识码的分支机构开展直接投资外汇登记进行业务准入管理。（三）银行应严格按照本通知及所附《直接投资外汇业务操作指引》的要求，认真履行真实性审核义务，通过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并应完整保存相关登记资料备查。（四）银行在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业务过程中，如遇规定不明确、数据不准确或发现异常情况的，应及时向相关市场主体注册地外汇局反馈。四、外汇局应强化对银行的培训指导和事后监管（一）外汇局应加强对银行的培训指导和事后监管，及时掌握其直接投资外汇业务办理和相关数据、报表及其它资料报送情况，对银行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合规性及内控制度的执行情况开展事后核查和检查，全面了解银行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的情况，发现异常情况要及时上报，对违规问题要及时纠正、处理。（二）银行未按规定要求履行直接投资外汇登记审核、统计、报告责任的，外汇局除按外汇管理有关规定对其处罚外，还可暂停该银行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对违规情节特别严重或暂停期内未能进行有效整改的，外汇局可停止该银行办理直接投资外汇登记。本通知自2015年6月1日起实施。本通知实施后，之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地区继续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在部分地区开展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36号）等有关规定实行意愿结汇政策。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外资银行、农村合作银行；各中资银行接到通知后，应及时转发所辖各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映。附件：直接投资外汇业务操作指引国家外汇管理局2015年2月13日附件1: 直接投资外汇业务操作指引附件2: 指引附件 直接投资外汇业务申请表 |